

#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8. May \_ Vol. 88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 🔍 정책 / 법령 정보

###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 감사원, HACCP/친환경인증등인증제도 실효성 문제 있어...

감사원은 농축산물 안전관리 분야별 실태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해 11월 20일 ~ 12월 15일 까지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 안전관리 분야",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분야", "위기대응 분야" 등 3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총 31건의 제도 개선 및 주의요구 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문제점은 ▲(재배, 생산 환경, 절차 관리)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직원 자격요건 미달, 1인당 심사건수 과다, 안전관리인증 기준 적용업소 사후관리 부실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남용방지) 미등록 농약 관리·감독 부실, 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도입 대비 미흡, 동물용의약품 허위처방 단속 미흡 ▲(원산지 위반 단속) 도매시장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관리 부실, 단속기관간 위반자료 공유 및 활용 미흡으로 비효율적 단속 ▲(농축산물 위해정보수집 및 대응) 식용란살충제 성분검출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등록된 이후에도 위기대응 시스템 미작동 등이다. 특히,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단속·적발된 HACCP 적용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 불시에 수시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또는 '세스코 식품안전' 사이트(▶[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감사원, 5월 9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도달 식품위생 솔루션



###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적용
- HACCP 컨설팅 know-how 적용
-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 해충방제+HACCP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 이물 클레임 예방

# 국민의 삶이 우선인 나라,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이다.

- (농·축·수산물부터 안전관리 강화)**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19년~)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21년~)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입단계 안전관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기한 위조 등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18년 2월 도입하였습니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달걀 안전관리 강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18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과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안전 강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위생취약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식품안전정보앱(식품안전나라)을 통해 공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였습니다.
-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18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시행)**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18년 4월 시행하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추천하여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여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국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18년 4월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온라인 감시기능 강화)**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감시기능 통합·운영하는 사이버조사단을 '18년 2월 신설하였습니다.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9일)



## 세스코 표시 컨설팅 서비스

**비용**

맞은 법령 변경에 따른  
인세 등만 변경 최소화 유도

이슈로 인한 불용&회수  
제품 최소화

**인력(역량) 관리**

맞은 인력 변화에 따른  
관리 역량 유지

표시 관리 인력의  
업무 효율성 증대

**마케팅**

최소 표시사항 적용으로  
마케팅포인트 면적 증가

전문인력 대응으로  
리스크 최소화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MD당 20제품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처음부터 끝까지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법규 리스크 관리**

# '홍삼음료, 두유, 시리얼, 슬러시'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

-어린이 식품제품안전분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어린이 안전 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 대책' 중 식품안전 및 제품안전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1. 어린이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해·영양정보 표시를 강화합니다.
  - 1) 떡볶이·김밥 등 분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매장 수 100개 이상)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계란, 우유 등) 표시의무를 확대 추진합니다.('18~)
  - 2)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하는 간식류(팝콘 등)에 대해 당 함량 등의 영양성분 자율영양표시 개선을 추진합니다.
  - 3) 어린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4종에 대해서는 '보호자 지도필요', '어린이 섭취금지'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 1)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무적용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20)하고, 영세·소규모 업체에는 시설개선 비용과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 2) 최근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시리얼, 슬러시 등)과 어린이 타깃 식품(홍삼음료, 두유 등)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3) 어린이가 섭취하였을 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신맛이 나는 사탕은 어린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로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해를 끼칠 수 있어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합니다.('18) 아울러 어린이 섭취 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LED 캔디, 카페인 함유식품 등)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제한을 추진합니다.('18)
3.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입·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1)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20%~30%로 높이고 수입과자 전문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함께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22)
4.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을 위해 학기 초 합동점검(3월, 8월)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6월, 11월)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연중)
  - 1)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특별점검 실시하여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22)
  - 2) 키즈카페,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기별 어린이 집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화합니다.
  - 3)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식점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력점검제를 지속하여 추진합니다.(~'22)
  - 4)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버거, 김밥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영유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연 2회)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22)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3일)

## 세스코 HACCP 컨설팅 서비스



신뢰성  
다수의 정부 인증 보유



고객 지향  
고객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



전문성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 및  
컨설팅 실적 보유

- 식품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록 업체 (식약처)
-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식약처 제10호)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식약처 제4호)
- 책임 컨설턴트 및 자문단 운영
- 품목 유형별 특성을 반영, 최적의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
- 컨설턴트 전원 상근 인력으로 책임감 있는 컨설팅 수행
- 고객 눈높이 반영 교육 및 지도 수행
- IPM(해충방제) 노하우 접목을 통한 시설 진단

## 원료 냉동육의 해동상태로 식육가공업소에 공급 허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은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이다.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9일)

## 하절기 대비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

정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 (계란 검사)** 정부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5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신규약품 허가 및 닭 진드기 방제 지원)**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하였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 개선)**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 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조사(네덜란드)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마련, 배포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 조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2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9일)

###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프로그램

 <p>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기관</p>	 <p>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한 현장 적용력 증대</p>	 <p>시뮬레이션 롬을 통한 체험 / 실습형 교육</p>	 <p>특화 전문부가서비스를 통한 수감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처 기준에 부합한 전문강사, 교육 시설, 전문 운영시스템을 갖춘 식약처 지정 HACCP 교육기관</li> <li>• 교육부 지정 평생교육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사업장에 업종/업태/규모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 위탁 교육 실시</li> <li>•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한 눈높이 교육</li> <li>• 법규 위반, 식품위생 전반의 면밀한 해결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유통, 제과점, 육가공 공장, 베이커리 공장 등 식품 취급 현장을 그대로 재현</li> <li>• 업종별 다양한 시설에서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전문기술 상담소” 운영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HACCP팀장 과정)</li> <li>•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주간 제공 (식품안전, 사건사고, 정책 동향 등)</li> </ul>

## 공인검사기관 영양성분검사 결과로 허용오차 적용예외 인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다만,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4일)

##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제외 대상 인정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4일)

## 어린이음료 일부제품, 당류 함량 높아 구입시 확인할 필요

- 시험대상전 제품이 산성, 과다섭취할 경우 치아에 영향줄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음료 14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험결과, 당류는 시험대상 제품 간 함량 차이가 컸고, 산성도(pH) 측정 결과, 전 제품이 산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소, 보존료 등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음료 기준에는 적합했다며, 1개 제품은 표시 개선이 필요하여 해당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고 동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자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4월 30일)



세스코 시험분석 서비스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HACCP 위해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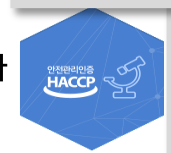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0호(식품), 제59호(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첨단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증 하는 국가공인검사기관

## '18년 5~7월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1차)	김치류, 소스류 등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5.14 ~ 5.18
○ 수산물 양식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점검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양식장 및 판매업체	5.14 ~ 5.23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2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6.4 ~ 6.11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아이스크림, 햄, 소시지 등 즉석섭취가공품 등	6.7 ~ 6.15
○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체 점검	빵류, 면류, 식용유지류, 조미식품(소스류 등) 등	6.11 ~ 6.20
○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업체 점검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야생동물카페 등	6.18 ~ 6.22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 교차점검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커피.주스 프랜차이즈 등	7.2 ~ 7.1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산업 NEWS


### 세스코, 2018년도 식품HACCP 컨설팅업체 등록 선정

- 소규모 떡류업체 150개소 560만원까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도 식품HACCP 컨설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HACCP컨설팅 업체 평가한 결과 세스코가 "식품HACCP컨설팅 등록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로 세스코는 식약처의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떡류업체 150개소(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21명 미만)는 HACCP 컨설팅에 소요되는 8백만원의 70%인 560만원을 선착순으로 국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시스템 교육, 영업장의 선행요건 관리기준 작성·운영방법, 개별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방법 등이 수행되며, 컨설팅업체 및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롭게 평가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스코 관계자는 "양질의 HACCP 컨설팅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업체의 식품안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세스코는 식품.축산물 HACCP컨설팅 등록 기관인 동시에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및 식품.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지정돼 있어, 식품 HACCP컨설팅과 시험분석,接客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통해 식품위생안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food.co.kr

**HACCP 정기 과정 (5/30, 6/27)**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5/30, 6/27)**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5/28~29, 6/14~15)**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HACCP 팀장 또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 식품 전문 교육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7/10)**

- 표시 연관 법규를 한눈에 소개(법, 공전, 기타 법규)
-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표시 근거와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원산지를 직접! 작성하고 오류사항도 찾기도 한번에!

**환급**